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08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5
1. 총괄적 검토	5
2. 주요 조문별 검토	9
가. 정의(안 제3조)	9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10
다.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및 제10조)	11
라. 관계 기관 등예의 협조요청(안 제11조)	13
마.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안 제12조 및 제13조) ..	13
바.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	16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

(3) 회 부 일 : 2024. 10. 4.

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노인빈곤은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회의 차단 및 각종 차별을 초래함에 따라 빈곤노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노인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을 위하여 국가가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빈곤노인이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정의함(안 제3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지원 등 빈곤노인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노인의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곤노인의 보건·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과 빈곤노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Ⅱ. 검토 의견

1. 총괄적 검토

-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노인빈곤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기회를 차단하고, 각종 차별을 초래함에 따라 빈곤노인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노인의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제정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빈곤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빈곤노인 지원에 관한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 수립 및 기관 간 조정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소속의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안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안 제12조) 등으로, 부칙에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함.

< 제정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구분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
제1조 (목적)	빈곤노인이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2조 (기본이념)	빈곤노인이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조화로운 생활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
제3조 (정의)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3개 사항에 대해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빈곤노인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 빈곤노인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규정
제6조 (실태조사)	빈곤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곤노인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9조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인빈곤예방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설치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기획재정부차관 등 5개 부처 차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해 자료 협조 요청 가능
제12조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자체는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의무적 실시
제13조 (노인빈곤예방전담 기관)	제12조의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지정 가능
제14조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칙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¹⁾(65세 이상 노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 38.2%로 전년 38.1% 대비 0.1% 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 3년간 다시 높아지고 있음.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66세 이상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40.4%로 2023년 기준 OECD 평균(14.2%)의 2.8배가 넘는 수준으로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OECD 최고수준임.

< 노인빈곤율 >

(단위 :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포함)	시장소득 기준	60.2	60.3	61.3	62.5	63.2	65.5	-	-	-	-	-		
	처분가능소득기준	47.6	47.2	48.1	47.4	44.8	46.5	-	-	-	-	-		
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소득 기준	56.9	55.4	55.7	55.9	56.6	57.5	56.7	58.5	59.0	58.6	57.6	57.1	55.5
	처분가능소득기준	46.5	45.4	46.3	44.5	43.2	43.6	42.3	42.0	41.4	38.9	37.6	38.1	38.2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1)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통해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2016년 소득결과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2)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며, 중위소득 50% 빈곤선 기준임
 3)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와 농가경제조사를 결합하여 OECD의 6차 소득측정 개념체계 기준으로 작성
 4)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OECD의 7차 소득측정 개념체계 기준으로 작성
 5)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 가구간 이전지출 및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6)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 5), 6)의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은 OECD 7차 소득측정 개념에 따른 소득임
 - 6차 소득측정 개념체계에서는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지 않음

□ 제정안은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을 위하여 국가가 빈곤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음.

1)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

□ 한편, 보다 체계적인 노인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제정안에서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9조) 등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안 제1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하지만 제정안에는 노인빈곤 예방 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제정안에서와 같이 국가가 노인빈곤 예방 등을 위한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제정안과 관련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 소관 현행 법률로 「노인복지법」²⁾과 「노후준비 지원법」³⁾이 시행 중이고, 그 외에 노후 소득 보장과 저소득층 노인복지에 관해 개별 사업법(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시행 중이므로 이들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제정안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임⁴⁾.

2)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노후준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빈곤노인에 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 7,800만원(연평균 7,560만원) 이상으로 추계함.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3조)

- 제정안 제3조에서는 노인, 노인빈곤, 빈곤노인 등 이 법안과 핵심적으로 관련된 3가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빈곤”이란 노인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보건적·복지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노인”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말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특히, 제정안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및 인구 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제정안에 노인의 연령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⁵⁾에서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수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5) 「노인복지법」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노인의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4. 생 략

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범정부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특히 제정안에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일정 부분 행정적 측면에서 부담도 있겠으나 상황에 맞는 정부 정책이 가능해진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음.

- 한편, 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시에만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수립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또한 안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계획에 대한 조정·점검·변경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다.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운영은 15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차관 등 5개 부처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됨.

제9조(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종합적인 빈곤노인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빈곤노인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노인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노인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2.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차관
3. 빈곤노인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노인빈곤예방위원회는 앞서 본 대로 기본계획 심의 외에, 빈곤노인 정책의 기본방향 등 핵심적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 정책에 관해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의 법적 위치를 가짐.
-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위원에 보건복지부차관이 제외되어 있으나, 위원장의 역할과 위원의 역할은 상이하므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 제7조제1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안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노인빈곤문제는 중앙정부의 노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6)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임.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빈곤예방위원회의 경우, 정부위원회를 폐지·통합하고 있는 정책기조⁷⁾에 맞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⁸⁾.

6) 「지방자치법」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 ② ~ ⑦ (생략)

7) 행안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의 폐지·통합계획 발표('22.9.)

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안 제11조)

- 제정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노인빈곤예방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본 제정안에 설치 근거가 없는 지역위원회는 삭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협조요청의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마.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안 제12조 및 제13조)

- 제정안 제12조에서는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노인빈곤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제13조에서는 이들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빈곤예방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등을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대안 검토 가능

제12조(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빈곤 예방과 빈곤노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빈곤노인 상담 및 지원사업에의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제13조에 따른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당 조항은 법안의 핵심적 규정 중 하나로서,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바, 이는 그 만큼 노인빈곤 관련 사안이 중대하고 국가적 현안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한편으로, 앞서 보았듯이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봄. 아울러 빈곤노인 지원사업으로 제정안에서는 4가지 유형을 들고 있으나,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 강화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좀 더 보완될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노후준비 지원사업과 노인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 비교 >

「노후준비 지원법」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8.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9.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실시) 1.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빈곤노인 상담 및 지원사업에의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아울러,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기존 기관들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안 제13조에서의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동 기관은 제정안의 핵심적 사업인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임에도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장치는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겠음.

바.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

- 제정안 제14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제14조(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제13조에 따른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시스템은 「노후준비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정보의 전자적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효율적 노인빈곤 관련 정보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는 정보를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안 제14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 제공의 목적 및 제공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⁹⁾.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한편, 노인빈곤 예방 및 빈곤노인 지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등이 있음. 제정안에 따른 노인빈곤예방정보시스템이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과 중복됨이 없이 차별화되어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하겠음.

< 관련 정보시스템 주요 구축내용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법적 근거	「노후준비 지원법」 제15조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
주요 구축 내용	노후준비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기능 구축 ('22.6월 개통)	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 ('22년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개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22년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개통)

문 의 처

02)6788-5499